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용에 대한 규제 동향

강윤지 연구원

요약

여러 국가가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용에 대해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관련 규제의 성격이나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최근 호주에서는 업계 차원의 자율 규제를 시행하였는데, 자율 규제로 인해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 여러 국가가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용에 대해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 1997년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오비에도 협약(Oviedo Convention)을 체결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만들어 보험회사의 유전자 정보 이용을 제한적이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영국은 ‘유전자 검사 및 보험에 관한 규정(Code on Genetic Testing and Insurance)’을 통해 보험회사의 선별 유전자 검사 결과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유전 정보 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 캐나다는 ‘유전자 차별 금지법(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10)’에 따라 유전자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관련 규제는 규제의 성격이나 적용 범위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표 1〉 참조)

- 독일,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일정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에 한해서만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활용 금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망 보장 한도 30만 유로를 초과하는 보험 인수 시 보험계약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은 관련 규제가 건강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주(州) 단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플로리다 주에서는 건강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장기요양보험회사의 유전자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되며 규제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됨¹⁾

1) Forbes(2022. 10. 28), “Genetic Test Results and Life Insurance: What You Need to Know”

〈표 1〉 국가별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활용 금지 규제’의 성격 및 적용 범위

국가	규제의 성격	규제 적용 범위	비고
독일	법적 규제	일정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	사망 보장 한도 3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 해당
미국	법적 규제	건강 보험	-
스위스	법적 규제	일정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	사망 보장 한도 40만 프랑 이하인 경우에 해당
영국	법적 규제	일정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	사망 보장 한도 5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해당 (헌팅턴 병에 한해서만 적용)
캐나다	법적 규제	모든 보험	-
호주	업계 자율 규제	일정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	사망 보장 한도 50만 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

자료: 각국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 한편, 최근에 시행된 호주의 규제는 영국 규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규제들과 달리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2019년부터 시행된 동 규제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보험계약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유전자 검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영국의 규제와 유사한 형태임
 - 반면, 영국의 규제는 정부와 보험회사협회 간의 공식적인 협약인 반면 호주의 규제는 호주 정부의 합의나 개입 없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동 규제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²⁾는, 호주의 규제가 자율 규제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후로도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규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율 규제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연구 참여를 기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2) Jane Tiller et al.(2023. 6. 30), “Australian Genetics & Life Insurance Moratorium: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and Response”; 위 연구는 호주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음